

경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라 한다)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센터는 교수·학습법 개발, 교수·학습 지원 및 상담, 원격수업지원 등을 통하여 본 교의 우수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제3조(사업) 본 센터는 우리대학교 교원 및 재학생들에 대한 교수·학습 지원 및 학생 학습 상담, 원격수업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혁신본부 주관 하에 시행 한다.
<개정 2019.09.01., 2021.03.01.>

제3조의2(업무 및 기능)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 <개정 2019.09.01., 2020.09.01., 2021.03.01.>

1. 교원들의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학생들의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원격수업 관련 시스템 관리 및 운영
4.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지원
5. 학생 학습 상담 지원
6. 교수학습을 위한 매체 제작 지원 및 운용
7. 삭제 <2020.09.01.>
8. 강의방식의 다양화 지원
9. 학습역량강화위원회의 주관부서로서의 역할 수행
10. KW-TQM(Teaching Quality Management) 운영 지원
11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2장 조 직

제4조(임직원)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직원을 둘 수 있다.

<개정 2019.03.01.>

1. 센터장 1명
2. 삭제 <2020.09.01.>

3. 운영위원회 위원 약간 명

4.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, 행정지원 직원 약간 명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우리대학교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.

제6조 삭제 <2021.03.01.>

제6조의2 (객원연구원) ① 객원연구원은 센터의 학습컨설팅 또는 기타 사업의 운영을 돕는다.

② 객원연구원은 상담 및 학습코칭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03.01.]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운영위원회)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1.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사업계획·운영·평가·개선에 관한 사항
2.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규정 제정,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<삭제 2021.03.01.>
5. <삭제 2021.03.01.>
6. <삭제 2021.03.01.>
7. <삭제 2021.03.01.>
8. <삭제 2021.03.01.>
9.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0조(소집 및 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4장 재 정

제11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대학교의 지원금, 산업체 및 개인의 출연금, 각종 연구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5장 보 칙

제13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03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